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구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구미I.C주변)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반미관지구 결정(신설) : 273,740m²
 - 신평 1미관지구 : 34,000m²(신평·원평동 일원)
 - 신평 2미관지구 : 34,410m²(신평동 일원)
 - 신평·광평미관지구 : 134,830m²(신평·광평동 일원)
 - 광평 1미관지구 : 12,640m²(광평동 일원)
 - 광평 2미관지구 : 57,860m²(광평동 일원)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 307,470m²(시설녹지 해제구역 전체)

4. 변경사유

- 구미 도시계획시설인 시설녹지로 결정되어 있어 수십년간 사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구미I.C 주변 시설녹지(완충녹지)를 폐지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구미 관문지역의 이상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미관지구 지정을 통한 제1종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추진코자 변경 결정함.

5. 참고사항

- 도시계획결정(안) 도면

6. 검토의견

- 구미 도시계획시설인 구미I.C부근은 시설녹지(완충녹지)로 수십년간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으며,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임과 동시에 구미의 관문 지역임.
- 따라서 관문지역의 미관조성과 이상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하지만 변경 결정에 있어서 기능성과 이용성에 부합하는지 와 일부 주민의 의견에 편중된 특혜의혹은 없는지 등에 착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